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출년월일 : 2003. 10 .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으로 애국정신 함양.
- 나. 화장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사무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명 및 제1조(목적) 중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를 “영주시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로 개정(안 제1조)
- 나. 위치의 명칭을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변경(안 제3조)
- 다. 사용료의 면제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추가(안 제7조)
- 라. 민간위탁관리운영 근거 및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제12조)
- 마.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방안 규정(안 제11조)
- 바. 수탁자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사.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 규정(안 제14조)
- 아.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자. 시설 멸실 및 훼손시 원상복구 등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차. 위탁계약 취소 시 청문 및 변론기회 부여 규정(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관련법령(발췌) 및 검토내역 1부.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설치및사용” 을 “관리및운영” 으로 한다.

제1조 중 “설치 및 사용” 을 “관리 및 운영” 으로 한다.

제3조 중 “가흥2동” 을 “고현동”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기타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0조 내지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화장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설립목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11조(운영경비)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은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 · 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 · 점검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도 · 점검시 소속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에 관한 장부 ·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취소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장장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한 때에는 실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청문)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수탁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
다.

제18조(준용규정) 화장장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영주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관리 및 운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화장장의 설치 및 사용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관리 및 운영
제3조(위치) 화장장은 영주시 가흥2동 산 14번지에 둔다.	제3조(위치) 고현동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사용료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p>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기타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신설>	<p>제10조(위탁운영) ① 화장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설립목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6조에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1조(운영경비)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은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u><신 설></u>	<p>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별일 수 있다.</p>
<u><신 설></u>	<p>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수탁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p>
<u><신 설></u>	<p>제14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도록 하게 할 수 있다.</p> <p>②지도·점검시 소속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5조(위탁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취소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u><신 설></u>	<p>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장장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실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u><신 설></u>	<p>제17조(청문)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수탁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다.</p>
<u><신 설></u>	<p>제18조(준용규정) 화장장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u>제10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제19조.....</p> <p>.....</p>

관련법령(발췌)

【국가유공자 시설이용료 감면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동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및 제3조(정부의 시책)----- 가능

【민간위탁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의 ②----- 가능
- 지방재정법 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②----- 가능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가능
-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1조)목적 및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가능

【민간위탁 대상자 (관련법규내용 발췌)】

-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